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61호 2009. 12. 29(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72호) 3
-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제973호)..... 7
- ◀ 공 고 ▶
- 공 인 공 고(제2009-1323호) 14
- 공 인 공 고(제2009-1324호) 20
-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남구 공고 제2009-234호) 21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2

회								
람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09. 12. 28(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기간 주요도로 교통소통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연시 죽도시장과, 덕실마을 등 관광객과 시민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 교통불편으로 지역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 현장행정 적극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공무원들이 행정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과거의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추진해 주기바람.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 연말연시 산불 등 재해발생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얼마남지 않은 연말 마무리를 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0년을 맞이 할 수 있기를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교통행정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09-1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광고물 부착자 제재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음. - 불법광고물 부착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근본원인을 차단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새마을봉사과 (남, 북구청)</p>
'09-1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기간 무료급식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연시 잦은 연휴로 식사해결을 위해 무료급식소를 찾고있는 불우이웃들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고, - 연휴기간동안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원 등을 점검하고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여 급식소를 찾는 사람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하기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복지과</p>
'09-1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불편 공사 공기단축 특단의 조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일원 시민불편을 주는 공사는 야간공사 추진 등 공기단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기 바람. - 공사개시전 철저히 준비하였다가 시작되면 관문로 공사(S병원앞 도로공사)처럼 최단시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하수도과</p>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29일

포항시 조례 제 972 호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 조례』 중 별표 2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한다. ②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란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한다.

③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별표 1의 보건소보건의소보건의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하고 별표 3의 자치구가 아닌 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한다.

④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중 별표 2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한다. ⑤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 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한다.

⑥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별표 1 농지관리위원회정수란의 “대보면” 을 “호미곶면” 으로 한다.

【별표】 <개정 2002.11.11, 2004.2.16, 2004.7.27, 2006.5.19, 2006.8.8, 2008.11.17, 2009.12.29>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삼정리, 석병리, 성동리, 구평리, 장길리, 하정리, 병포리, 후동리, 눌태리 일원
	연 일 읍	생지리, 괴정리, 동문리, 오천리, 유강리, 자명리, 학전리, 달전리, 중명리, 중단리, 택전리, 인주리, 우복리 일원
	오 천 읍 <개정 2006.8.8>	월리, 문덕리, 향사리, 진전리, 갈평리, 문충리, 용산리, 광명리, 세계리, 용덕리, 구정리 일원 중전 대송면 옥명리 산89-2, 산96-4, 산212-5, 산212-6, 산222-5, 산222-6
	대 송 면 <개정 2006.8.8>	남성리, 공수리, 장동리, 홍계리, 산여리, 대각리, 송동리, 제내리, 옥명리 일원 중전 장흥동 1867부터 1872까지, 1878의1부터 1878의3까지 중전 오천읍 문덕리 912-1, 913, 920-1, 산57-1, 산58, 산59, 산60, 산61-2, 산61-3, 산68-1, 산69-2, 산70-1, 산71-1, 산73-1, 산74-1, 산122-1, 산125-1, 산180-1, 산181-1, 산182-1, 산185-2
	동 해 면	도구리, 약전리, 신정리, 금광리, 석리, 임곡리, 입암리, 마산리, 흥환리, 중흥리, 발산리, 상정리, 중산리, 공당리 일원
	장 기 면	읍내리, 마현리, 금곡리, 영암리, 신창리, 양포리, 계원리, 두원리, 수성리, 임중리, 방산리, 서촌리, 금오리, 대진리, 모포리, 학계리, 학곡리, 신계리, 창지리, 대곡리, 죽정리, 정천리 일원 중전 동해면 금광리 322부터 337까지, 924, 925
	호미곶면	강사리, 대보리, 구만리, 대동배리 일원
	상 도 동	상도동 일원 연일읍 생지리중 2~4의31, 4의 33~4의 37, 5의 1~5의 5, 5의 7, 5의 11~5의 15, 6, 6의 1~6의 14, 7의1~7의 10, 7의 12, 7의 14~7의16, 8의 1~8의 2, 17, 476, 477
	대 도 동	대도동 일원
	해 도 동	해도동 일원
	송 도 동	송도동 일원
	청 립 동	청립동 일원
	일 월 동	일월동 일원
	송 정 동	송정동 일원
	송 내 동	송내동 일원
	동 촌 동	동촌동 일원
	괴 동 동	괴동동 일원
	장 흥 동	장흥동 일원 연일읍 오천리중 303의 3, 303의 4, 304의1, 304의 4번부터 304의7까지, 305, 305-1, 305의 3부터 305의 5까지, 305의 7, 306의 5, 308의 5, 39의 1
	호 동	호동 일원
	인 덕 동	인덕동 일원
지 곡 동	지곡동 일원	
효 자 동	효자동 일원 및 연일읍 생지리중 4의 32, 5의 6, 5의 8번부터 5의 10번지, 5의 16부터 5의 18까지, 7의 11번지, 7의 13번지, 대잠동 101의 31부터 32, 101의 35, 103의 8, 104의 3부터 4, 105의 2, 105의 11, 105의 13, 106의 2, 106의 5, 중전 대잠동중 105-19, 106-3, 106-20, 106-22부터 106-24, 107-10, 107-19 899-12, 상도동중 470-13, 470-21, 470-25, 558-4, 572-1, 연일읍 생지리중 501-1	
대 잠 동	대잠동 일원, 중전 이동 18의2, 18의3, 19의1, 19의2, 20부터 23까지, 24의1부터 24의3까지, 25, 26의 1, 67의5부터 67의7까지, 629의7, 629의8, 630의 17, 산178의1 중전 득량동 산37의4	
이 동	이동 일원 중전 대잠동 463, 464, 467의2, 468의1, 471, 472의1, 472의2, 473부터 476까지, 산43, 산44의5, 산48의1, 산48의2, 산49의1, 산49의3부터 산49의10까지 중전 득량동 산21의6, 산23의1, 산24의17	

구 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북구	흥 해 읍	매산리, 북송리, 마산리, 옥성리, 약성리, 학성리, 남성리, 성내리, 중성리, 망천리, 남송리, 곡강리, 용한리, 우목리, 죽천리, 용곡리, 양백리, 덕성리, 덕장리, 용전리, 용천리, 금장리, 흥안리, 칠포리, 오도리, 초곡리, 학천리, 성곡리, 이인리, 대련리 일원
	신 광 면	냉수리, 흥곡리, 우각리, 죽성리, 상읍리, 토성리, 사정리, 안덕리, 만석리, 반곡리, 기일리, 마북리, 호리 일원
	청 하 면	덕성리, 덕천리, 미남리, 필화리, 용두리, 월포리, 방어리, 이가리, 청진리, 신흥리, 소동리, 고현리, 하대리, 상대리, 서정리, 명안리, 유계리 청계리 일원
	송 라 면	상송리, 하송리, 중산리, 광천리, 조사리, 방석리, 화진리, 대진리, 지경리 일원
	기 계 면	현내리, 지가리, 봉계리, 고지리, 문성리, 학야리, 성계리, 내단리, 화대리, 계전리, 화봉리, 미현리, 인비리, 구지리, 가안리, 남계리 일원
	죽 장 면	상옥리, 하옥리, 가사리, 매현리, 침곡리, 입암리, 일광리, 지동리, 정자리, 감곡리, 상사리, 하사리, 석계리, 합덕리, 월평리, 방흥리, 현내리, 봉계리, 두마리 일원
	기 북 면	관천리, 대곡리, 울산리, 용기리, 오덕리, 탑정리, 성법리 일원
	대 흥 동	대흥동 일원
	신 흥 동	신흥동 일원
	남 빈 동	남빈동 일원
	상 원 동	상원동 일원
	여 천 동	여천동 일원
	중 앙 동	중앙동 일원
	덕 산 동	덕산동 일원
	덕 수 동	덕수동 일원
	대 신 동	대신동 일원
	동빈로1가	동빈1가 일원
	동빈로2가	동빈2가 일원
	학 산 동	학산동 일원
	항 구 동	항구동 일원
	득 량 동	득량동 일원 중전 이동 1의1, 202의2, 203의1, 629의10, 산115의3, 산115의7, 산 117의1, 산118, 산120, 산 122, 산123의2, 산 123의16, 산180 중전 학잠동 236의35
	학 잠 동	학잠동 일원
	죽 도 동 <개정2006. 5.19>	죽도동 일원 중전 해도동 486의 1~486의 2, 486의 10~486의 13, 486의 15~486의 19, 486의 21 중전 대도동 27의 1~27의 3, 27의 19~27의 34 중전 해도동 34의 23, 34의 60~34의 61
	용 흥 동	용흥동 일원
	우 현 동	우현동 일원 중전 학산동 223의 3, 223의 6, 224의 2~224의 3, 224의 6~224의 10, 226의 2, 227, 227의 1, 230의 1~230의 2, 230의 26~230의 28, 231의 1~ 231의 2, 231의4~231의 5, 231의 7~ 231의 14, 231의 16, 232의 2, 233의 3, 234의 2, 340의 1
	창 포 동	창포동 일원
	두 호 동	두호동 일원 중전 창포동 44의1, 47, 256, 599의5 중전 학산동 300의1~300의5, 301, 301의1~301의 3, 341의 6, 산 5의7 중전 창포동 257, 258의1~258의 2, 259, 259의1, 260의 1~260의 2, 261~ 265, 304, 307, 310, 323, 329의3, 601, 602의6, 602의12, 산12의2, 산13~14, 산14의3, 산15의 1~15의2, 산16의1~16의 2, 산16의9~16의 23, 산17의2, 산103의2 중전 장성동 866의342~866의 343, 897, 900의1, 902의2~902의 4, 902의7, 903~907, 908의2~908의 4, 909의1, 978의2, 979의3, 981의4~981의 5, 1071 의3, 1316, 산 259의5~259의7, 산 260, 산 260의 1~260의 8, 산 261의 1, 산 261의5~261의 12, 산 263, 산 263의2~263의 9, 산 264의 3, 산 266의 1, 산 267, 산 267의1, 산 267의 5~267의 6, 산 303의1, 산 304의1

구 명	읍면동	관 할 구 역
북구	장성동	장성동 일원 종전 창포동 1~8, 9의1~9의 2, 10의1~10의 3, 11의1~15의2, 16의 1~18의3, 19의1~19의 3, 20의1~20의 2, 21의1~21의3, 22의1~24, 25의1~25의 5, 25의7~25의 8, 26의 1~26의 2, 27의1~27의 8, 28의1, 28의5~28의19, 29의1~29의 22, 29의24~30의4, 31의1, 31의12~32의10, 32의12~35의37, 38의1~41, 42의1~42의2, 43의1~43의 7, 44의3, 45의1~46의1, 247의1~248, 252의7~253의2, 253의4~253의10, 253의12, 253의14, 253의18, 599, 599의2, 599의4, 600, 600의2, 601, 산 1~2, 산 2의3~2의 4, 산 3의3, 산 5~6의5, 산 7의1~7의 2, 산 8의1~10, 산 11의2 종전 양덕동 435의1, 438의6, 438의8, 438의10, 441의1, 443의1, 461의11~461의 13, 526, 527, 531의1~531의 2, 532의1~532의 2, 533의1~533의 2, 534의 1~534의 2, 535~537, 538의1, 543의1, 544의1, 545~555, 555의1, 556의1, 560의1, 561, 562의1, 563~570, 570의1, 571, 572, 573의1, 579의1, 580의1, 581의 1~581의 3, 583의4~583의 5, 626의1~626의 2, 627, 628의1~628의 2, 629, 630의1, 631의1, 632, 803~805, 806의1, 807, 809, 810, 811의1~811의 2, 812, 813, 815, 825, 826, 829~831, 835, 836, 837의1, 837의10~837의 13, 837의 15~837의 24, 837의31, 925의3, 1152의 6~1152의 8, 1160의12~1160의 13, 1160의15~1160의 16, 산 230의1, 산231의1, 산 232의 1~232의 4, 산 233, 산 233의1~233의6, 산 234, 산 234의1, 산235의1, 산 255의1, 산 257의1, 산 258의1, 산 260의1~262의 2, 산 263의1, 산271의1 종전 환호동 183의1, 184의1, 산24의4
	양덕동	양덕동 일원, 종전의 장성동 1-1~8, 2~5, 6-1~2, 7~11, 12-1~2, 13, 14-1~4, 15-1~3, 16-1, 16-3~5, 17-1~2, 22~23, 33-1~2, 34~35, 36-1~3, 37~38, 41-1~3, 42-1~4, 43-1~5, 44-1~7, 45-1~4, 47-1~2, 50-1~3, 51-1~2, 165-1~4, 166, 167-1~9, 167-11~12, 168, 169, 169-4, 170, 170-2~3, 171, 191, 206, 208-2, 219, 220, 221, 222, 222-1, 223-1~2, 224, 225, 225-5~8, 226, 227-1~5, 227-7, 228, 229, 229~2, 230, 231-1~6, 232, 233, 234-1~10, 234-12~14, 234-25~42, 234-56~63, 234-66, 234-89, 237-2, 482-1, 483, 484-1, 1051-2, 1051-5, 1051-17~20, 1051-36, 1055-2~3, 1056, 1090-1~2, 1432-1~3, 1433-1~6, 1464-1, 1465-1, 산40-2, 산40-12, 2-1 종전의 여남동 266-4, 266-6, 267-4, 267-6, 268-4, 404-1 종전의 홍해읍 죽천리 389-4~5, 389-10~11, 389-14~16, 390-1, 391, 391-1, 392, 392-1~8, 402-1, 403-1, 405-1, 411, 412, 413, 414, 415, 415-1, 416, 417, 418, 419, 419-1~2, 420, 421-1, 423, 423-1~3, 424, 425, 426, 426-1, 427-1~2, 428, 429-1, 430-1~2, 430-6, 430-8, 431-1, 433-4, 687-1, 688-2, 689-4, 690-1, 691-1, 산57-1~8
	환호동	환호동 일원
	여남동	여남동 일원

1. 제안이유

구룡포읍 승격에 따른 출장소의 위치에 의해 단순 부여된 명칭으로 역사성과 지리적 상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보면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전체 주민의 86.1%가 찬성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읍·면·동란 중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개정함
- 나.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정수 조례 등 대보면 명칭이 포함된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29일

포항시 조례 제 973 호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포항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 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cc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 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 구역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관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격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 세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업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 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해당 공동 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 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 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1 이내인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

-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 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 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경상북도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 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 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 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 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 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 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 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감면 제외대상)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2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 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이를 준용,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달성된 부분은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조세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용 조문 정비
- 나. 노인복지시설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은 재산세를 경감하였으나, 2009년 지방세법으로 이관되어 감면규정을 폐지함.
- 라. 한국노동교육원·운수연구원·비영리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마. 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 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규정을 삭제함.
- 사.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를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 2009년 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폐지하고,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는 일반 버스 세율을 적용함.
- 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으로,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가 있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1천분의 1.5를 적용하여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효과 기대.
- 차.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 중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 및 종업원할)을 면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하여 감면규정을 폐지함.
- 타. 본문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사치성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으로 이관
- 파. 감면신청서식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의 서식과 일치하므로 감면조례의 서식을 폐지
- 하. 기타 현행 조례의 법 문장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표기법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감면시한을 2010년까지 연장함.

공 고

포항시공고 제2009 - 1323호

공 인 공 고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폐기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2. 28

- 1. 등록공인 사용개시 및 폐기일 : 2010. 1. 1
- 2. 등록 및 폐기사유 : 행정구역 명칭변경
- 3. 등록공인명 및 인영 : 붙임 1
- 4.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 2
- 5. 전자이미지 등록공인명 및 인영 : 붙임 3
- 6. 전자이미지 폐기공인명 및 인영 : 붙임 4

등록공인명 및 인영(붙임1)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호미꽃면 포항시장의인 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3.0Cm정방형		행정구역 명칭변경
민원실 포항시남구청장인 호미꽃면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꽃면장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민원실 호미꽃면장인 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꽃면 경리관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꽃면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꽃면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꽃면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행정구역명칭변경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곶면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곶면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
포항시남구 호미곶면계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3Cm×1.2Cm		"
제증명 포항시남구 호미곶면장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인증기용)

폐기공인명 및 인영(붙임2)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대보면 포항시장의인 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3.0Cm정방형		행정구역 명칭변경
민원실 포항시남구청장인 대보면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장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민원실 대보면장자의인 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 경리관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 지출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 물품관리관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 징수관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0Cm정방형		"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포항시남구 대보면 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행정구역명칭변경
포항시남구 대보면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 수입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세입 세출외현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1.8Cm정방형		"
포항시남구 대보면계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3Cm×1.2Cm		"
제증명 포항시남구 대보면장인 발급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인증기용)

전자이미지 등록공인명 및 인영(붙임 3)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포항시남구 호미곶면장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행정구역명칭변경
민원실 호미곶면장인 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전자이미지 폐기공인명 및 인영(붙임 4)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포항시남구 대보면장인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행정구역명칭변경
민원실 대보면장인 전용	한글전서체 가로방향 2.1Cm정방형		"

포항시공고 제2009 - 1324호

포항시공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공인의 인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 12. 28

공 인 공 고

- 1. 등록공인 사용개시일 : 2010. 1. 1
- 2. 등록사유 : 공인신조
-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붙임

[붙임]

공 인 명	규 격	인 영	비 고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글전서체 1.8×1.8 정방형		

포항시 남구 공고 제2009-234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포 항 시 남 구 청 장

2009년 12월 29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공고

소하천명	사업개요									비고
	공사명	공사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점	종점	축제	호안	기타	착공	준공		
눌태천	구룡포 눌태천 정비공사	구룡포 후동리 91-1	구룡포 눌태리 440	L=1,5km	L=1,5km	교량 4개소 낙차보 2개소	2010.02	2011.11	재해예방	편입사유지 51필지
세계천	오천 세계천 정비공사	오천읍 세계리 764-4	오천읍 세계리 산123	L=2,4km	L=2,4km	교량 2개소 낙차보 3개소	2010.02	2011.11	재해예방	편입사유지 35필지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편입토지 조서 포함)
 2. 위치도(축척 50,000분의 1 지형도)
-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09년 12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2. 28.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시행일	12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안계역수	임하역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역수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기계면	
			동지역 전체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변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4. 납(Pb)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6. 비소(As)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세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6가크롬(Cr ⁶⁺)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1.6	0.8	0.8	1.9	2.1	0.2	1.1	1.8	0.7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2	0.022	0.027	0.050	0.053	불검출	0.030	0.032	0.029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유해영양물질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득제한소득부산물	31.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1.21	0.65	0.97	0.76	0.95	0.45	0.30	0.29	0.98
	32.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649	0.0530	0.0656	0.0629	0.0392	0.0390	0.0535	0.0230	0.0262
	33.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3329	0.04467	0.05753	0.02278	0.01105	0.02596	0.02587	0.01159	0.02284
	3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Chloral hydrate)	0.03mg/l이하	0.00910	0.00701	0.00734	0.00944	0.00296	0.00590	0.00856	0.00242	0.00605
	35.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Dibromoacetone)	0.1mg/l이하	0.00205	0.00112	0.00118	0.00256	0.00304	0.00088	0.00156	0.00143	불검출
	36.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Dichloroacetone)	0.09mg/l이하	0.00459	0.00548	0.00586	0.00387	0.00245	0.00352	0.00407	0.00196	0.00209
	37.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Trichloroacetone)	0.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8. 할로아세트산(Haloacetic acids)	0.1mg/l이하	0.0698	0.0700	0.0589	0.0513	0.0314	0.0448	0.0225	0.0200	0.0247
	39.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2189	0.00833	0.00802	0.02431	0.01450	0.01079	0.01836	0.00640	0.00336
	40.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97	불검출	불검출	0.0158	0.0136	0.0022	0.0093	0.0050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야 (수자원공 사) (수광, 기계 일부)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수	눌태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41.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29.6	74.0	79.9	130.0	132.6	57.2	84.2	118.4	78.4
	42.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51	4.63	4.41	3.14	1.60	1.45	3.75	1.63	0.95
	43.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4.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5.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6.색도(Color)	1.0	1.0	1.0	1.0	1.0	1.0	1.0	1.0	1.0	불검출
	47.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수소이온농도(pH)	5.8-8.5	7.3	7.3	7.3	7.7	7.4	7.0	7.2	6.7	7.1
	49.아연(Zn)	3mg/ℓ이하	0.009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38	0.0034	0.0020	0.1568	불검출
	50.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46	12	14	55	51	13	38	21	8
	51.총발산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240.0	118.0	107.0	268.0	260.0	77.0	176.0	193.0	161.0
	52.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3.망간(Mn)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13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4.탁도(Turbidity)	0.5mg/ℓ이하	0.145	0.319	0.088	0.133	0.165	0.057	0.107	0.082	0.058
	55.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53	16	17	65	64	12	39	70	28
	56.알루미늄(Al)	0.2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29	0.034	0.02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정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정수장 급수지역 기 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영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문덕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1.27	0.69	0.93	0.78	1.00	0.47	0.29	0.2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09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33	0.0031	0.0031	0.1605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47	12	14	56	52	14	38	21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0.0138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